

㉓ 대부업 영위 목적 순자산액 현황(개인만 작성)

항목	금액	용도	종류 및 수량
자산 총계(A)			
㉔ 대부잔액			
㉕ 매입채권잔액			
㉖ 업무용 부동산			
㉗ 업무용 동산(차량 등)			
㉘ 현금 및 예치금			
㉙ 기타자산			
부채 총계(B)			
㉚ 차입금잔액			
㉛ 기타부채			
순자산(A-B)			

유의사항

(신청서 작성 관련)

- (㉑란 작성) 상호에는 대부업자(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)는 그 상호 중에 "대부"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"대부중개"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(이하 "대부업등"이라 한다) 이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은 직전 사업연도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이 50%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"대부" 또는 "대부중개"의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(㉑, ㉒, ㉓, ㉔, ㉕, ㉖란 작성) 전화번호 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,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(대부업등을 신규등록·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).
- (㉓, ㉔란 작성)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,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. 다만 시·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다.
- (㉕란 작성)
 - '대부잔액'(㉔) 및 '매입채권잔액'(㉕)은 각각 신청 기준일 현재 '실제 대부잔액' 및 '매입가액 기준 매입채권 잔액'을 의미한다.
 - 업무용 부동산(㉖) 및 동산 등(㉗) 자산 항목은 대부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으로 한정하며 취득가액 기준으로 기재한다. 예를 들어, 본인 거주 용도의 주택은 인정되지 않는다.
 - 차입금(㉚) 및 기타부채(㉛)는 대부업에 직접 소요되는 차입금 및 기타부채를 의미한다.
 - 순자산은 자산총계(A)에서 부채총계(B)를 뺀 금액을 말한다.

(구비서류)

- 대부업·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: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 이수증이어야 한다. 교육이수처는 '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' (한국대부금융협회)이다.
-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(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) 1부 :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(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,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.)에 대하여 소유,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.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,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.
-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(개인은 순자산액)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: 아래의 입증자료를 의미한다.
 - 법인의 경우
 -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 :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, 감사보고서
 -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: 세무서에서 발급한 "표준재무제표증명" 서류, 다만, "표준재무제표증명"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재무상태 확인이 가능한 회사 결산보고서 등 기타 서류(대표이사 확인서 또는 대표이사 원본대조필 첨부)
 - 개인의 경우
 - 부동산 : 영업소 등기부등본(공시가격 포함)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
 - 동산(차량 등) : 자동차 등록증 등 동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
 - 현금 및 예치금 : 예금잔액증명서(공시가격 또는 입차보증금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금액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어야 함) 1부
 - 기타 자산 : 기타 자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
 - 부채 총계 : 부채증명서 등 부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